



재정경제부

보도자료

• 풍요로운 나라
함께하는 선진경제
• 고품질 정책으로
신뢰받는 재경부

보도일시 2006.05.1(월) 조간부터

생 산 일	2006년 4월 28일(금)	생산부서	국고국 국유재산과
담당과장	진양현 (T:2110-2366)	담당자	황인웅 (T:2110-2367)

제목: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05.12.22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「국·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*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

* 주요 내용 : 국·공유재산의 교환·매각절차 합리화, 대부제도의 실효성 제고, 적극적 관리를 위한 유인 제고 등

○ 「국유재산법」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, 관계부처 협의(4.5~4.17)를 마치고 입법예고(5.1~5.22)를 실시하였음

개정안의 주요 내용은

- 경쟁입찰로 국유재산을 매각·임대하는 경우 1인이 입찰 하더라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면 유효한 입찰로 인정
- 보존·활용할 필요가 없는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입찰 과정에서 최고 50%까지 매각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함
- 국유재산과 공유·사유재산간 교환 요건을 완화하여 국유지 집단화, 청사·관사 이전 등을 지원

금번 시행령 개정으로

-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
- 국민들의 민원 해소와 국고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<별첨>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

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

< 별첨 >

「국유재산법」 시행령
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

2006. 5.

재 정 경 제 부
국 고 국

1. 국유재산 매각절차 간소화

□ 경쟁입찰 성립요건 완화 (§24②③, §34조의1, §36①)

현 행	개 정 안
◇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* *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	◇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

- 국유재산 매각·임대시 매각(임대료)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도 1인만 입찰하는 경우 유찰로 처리함에 따라
 - 매각·임대절차가 복잡해지고 유찰에 따른 매각금액·임대료 하향조정으로 국고수입 감소 등의 문제점을 개선
- 국유재산 매각·임대시 전자입찰(Onbid*) 의무화로 절차의 투명성·공정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반영
 - * 자산관리공사에 설치·운영중인 온라인 자산처분시스템

□ 국유재산 매각시 감정평가대상 재산가액기준 조정 (§37①)

현 행	개 정 안
◇ 특별시·광역시 : 1,000만원 기타 지역 : 300만원	◇ 특별시·광역시 : 1,500만원 기타 지역 : 500만원

- '82년 조정(특별시·광역시: 300→1,000만원, 기타지역: 100→300만원) 이후 미조정
- 감정평가비용 절감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, 국유재산 매각시와 동일하게 개선

2. 보존부적합 국유재산 매각시 매각가격 하한을 확대

현 행	개 정 안
◇ 2회 유찰시 다음회 입찰부터 최초예정가격의 10%씩 체감(遞減). 이 경우, 매각가격은 최초예정가격의 80%이상이어야 함	◇ 좌 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만,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재산은 최초예정가격의 50%이상까지 체감 허용

-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적고 관리 비용만 많이 들어 매각을 촉진할 필요
- 영세규모 토지, 노후화된 건물(부속토지 포함) 등 보존이 필요없는 재산의 원활한 매각을 통해 관리비용 절감 및 국고수입 증대 도모
- 국유재산 매각시 전자입찰(Onbid) 의무화로 절차의 투명성·공정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반영

※ 유사 입법례 : 국세물납주식 매각(국유재산법시행령 제38조), 국세 압류재산 공매(국세징수법 제74조)

3. 국유재산과 공유·사유재산과의 교환요건 완화

* 국유재산 : 국가소유 재산, 공유재산 : 자치단체 소유 재산

□ 교환시 가격제한 요건 완화 (§46①)

현행	개정안
◇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3/4이상일 것	◇ 좌동 ○ 다만, 국유지 집단화를 위한 교환의 경우 1/2이상이면 허용

- 잠종재산의 상당수가 영세규모 토지로서 보존가치가 적고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
- 소규모 잠종재산의 집단화를 위한 경우 교환요건을 완화하여 국유지 효용성을 높이고 국유지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

□ 교환시 종류제한 요건 완화 (§46②)

현행	개정안
◇ 서로 유사한 재산일 것 * 주된 재산이 동일(토지와 토지, 건물과 건물)할 것	◇ 다만, 청사·관사 이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 허용

- 청사 또는 관사 이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교환요건을 완화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

4.

기 타

□ 국유재산 매각대금 체납시 독촉시점 명확화 (§44③)

- 그간 매각대금 체납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납부기한(15일 이내)에 대한 규정만 있고 독촉 기한*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던 점을 개선

: “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” 납부를 고지토록 함

□ 무주·은닉부동산 신고시 보상금한도 확대 (§58②)

- 보상금 지급한도를 확대(1천만원→3천만원)하여 무주·은닉부동산의 적극적 신고 유인을 강화

* 05.12.22 규제개혁장관회의의 「국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」에 포함

□ 귀속 청산법인의 재산처리를 위해 설치(‘77)했던 연합청산 위원회를 폐지 (§61②③④⑤⑥)

- 정부위원회 정비계획(‘05.12.20 국무회의, 행자부)에서 연합청산 위원회 등 유명무실한 정부위원회를 정비기로 결정
- 同 위원회는 해방후 국가귀속된 청산법인 재산의 재산처리(국가귀속)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나
 - ‘94년 이후 신규재산이 발견되지 않고, 기존의 청산업무도 완료됨에 따라 현재는 운영할 실익이 없음

□ 공유재산 관리제도와 통일성 유지 (§34④, §26⑨, §37①⑩)

* 공유재산 관리제도에서 이미 도입·실시중 (행자부,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」)

- 지자체 국유재산담당자에 대한 관재활동비 지급근거 마련
- 국유재산 매각·임대시 측량 또는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매각대금·임대료에 실비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